한류기본법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오경·한민수·강선우

강유정 • 박수현 • 양문석

김윤덕 • 이병진 • 임미애

박 정 • 민병덕 • 한병도

정준호 · 김용만 · 서영교

윤호중·신영대 의원

(1791)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현상임.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 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류콘텐츠의 발전, 한류연관산업의 진흥 등 국가적 지원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 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류"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일컫는다고 정의함(안 제2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

-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 한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 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에 관한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한류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 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

외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한류사업자는 한류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 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한류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 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 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말한다.
- 2. "한류콘텐츠"란 한류를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에 디지털기술 등의 적용·미디어와의 융합 등 한류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한 것을 말한다.
-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문화적, 산업적 요소를 제작 (기획·개발을 포함한다)·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하다.

-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콘텐츠 와 한류연관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 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정책의 추진과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 관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류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

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한다.

- 1. 한류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2. 한류정책의 분야별 추진방향과 추진시책
- 3. 한류콘텐츠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 4. 한류연관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한류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한류정책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소관하는 영역에서의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을 구체화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중앙행정기관의 한류정책 추진방향, 추진시책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정하여한류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한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한류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한류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한류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간사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한류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 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 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한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한류정책심의위원회) ①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 한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에 관한 사항
 - 2. 한류정책의 총괄·조정
 - 3. 한류정책의 개발과 자문
 - 4. 한류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 5.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한류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 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 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2. 한류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류의 기반조성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한류정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대학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한류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1.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연구
 - 3. 한류연관산업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 사·연구
- 4. 그 밖에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한류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 2. 제9조의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 3.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및 데이터분석결과

- 4. 한류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해외 문화콘텐츠시장동향데이터
- 5.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 도·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 6. 그밖에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 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등 한류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 ③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한 데이터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한류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마케팅 지원 등 한류콘 텐츠 수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한류콘텐츠 및 한류 연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류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한류사업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4장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 지원 등

-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와 관련한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 육성
 - 2.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 진
 - 3. 한류관련 사업의 공모·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 로 확대를 위한 협력
 - 4. 한류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 6.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 7. 그 밖에 한류관련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체계의 구

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 협력하여 한류수출관련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한류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신전문 금융업자가 한류사업자에 대하여 투자·융자 등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는 한류사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④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2.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촉진
 - 3. 한류사업자의 해외 홍보 · 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5. 한류수출을 위한 해외 시설 · 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6. 한류수출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 · 운영
 - 7. 그 밖에 한류수출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한류수출관련 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우수인력 및 한류수출관련 기업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한류수출관련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알

-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 5. 한류수출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 제협력 촉진
- 6. 한류수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 7. 그 밖에 국내 한류수출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수출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콘텐츠관련회사 또는 콘텐츠관련기관을 해외한류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한류수출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해외한류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문화자산을 한류콘텐츠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류사 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진흥과 한류콘텐츠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 제21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협회의 설립)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국고 보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콘텐츠의 개발과 한류연관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 또는 기금관리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